

## V. 세정분야에 PBLIS의 활용방안

현행 토지기록전산시스템은 온라인 실시간 운영으로 전국 3,475만 필지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,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, 지목, 면적, 소유권, 변동사항, 토지등급 등 총4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전산화한 것이다. 토지대장 등본발급 등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처리 지원과 종합토지세 부과 등 토지세제 운용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있는 속성정보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.

그러므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도형정보 즉, 지적도면전산화가 빨리 완성되어 입체적인 지적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.<sup>4)</sup>

행정자치부에서는 94년에 토지거래실명제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적·주민자료와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가구별 소유현황을 파악하고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국토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, 입법·사법·행정부 등 700여개 기관에 각종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<sup>5)</sup>(<그림 6> 참조)

PBLIS를 지방세행정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업무효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.

### 1. 업무의 표준화, 단순화

증가 일로에 있는 복잡한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작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 세정분야의 경우도 기본이 되는 各種課稅台帳을 관계장부와 대조 기록활용이 용이하게 하고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.

이러한 업무의 표준화와 단순화를 기하기 위해선 과세대장서식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위한 code개발 등이 요구된다.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PBLIS와 지방세제시스템이 연계되면 실시간으로 갱신된 과세정보를 취득 할 수 있을 것이다.

4) 이성화, 전계논문

5) 한국전산원, 국자기본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방안 연구, 1999